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당(지구당) 설치근거 마련〉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28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712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김영배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영배의원 등 34인

나. 발 의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남인순의원안

가. 발 의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영배의원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남인순의원안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의 법정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려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지역당과 연계되는 현행법상 규정들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즉, 개정안은 지역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 법률안으로서 「정당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시키려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현행 “중앙당-시·도당”의 2단계 구조에서 “중앙당-시·도당-지역당”의 3단계 구조로 변경하려는 내용인바, 해당 법률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역당을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할 경우 개정안은 논의의 실익이 없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비교》

구 분	김영배의원안	윤상현의원안	남인순의원안	장경태의원안
구성 (제3조)	현행(중앙당&시도당) + 지역당			
지역당 유급사무직원수 (제30조)	1명 이내	2명 초과 금지		
당원협의회 설치단위 (제37조)	읍·면·동별	지역당 미설치 국회의원지역 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	읍·면·동별	

반면에, 지역당을 신설하기로 할 경우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정당에 관한 규정들에 지역당을 추가하여 정당조직 사이의 통일성 있는 규율을 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¹⁾과 같이 지역당(구·시·군당)을 도입하면서 시·도당을 임의기구로 변경할 경우 정당의 구성요소가 현행 “중앙당-시·도당”에서 “중앙당-지역당(구·시·군당)”으로 변경되므로 그에 맞추어 현행법상 시·도당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당법」 심사 과정에서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 허용 여부, 당원협회의 설치단위 변경 여부 등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달라지므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32

1) 2016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0016, 2016.8.25.제안), 2021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1067, 2021.5.28. 제안)

참고

개정안 조문대비표

<김영배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선거 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u>중앙당</u> 및 <u>시·도당</u>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⑦ (생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u>선거에 있어서 당해</u>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 ----- ----- -----<u>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u>-----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u>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u>-----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 마. (생 략)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u>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u>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료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 파. (생 략)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u>시·도당</u>을 방문하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 -----<u>시·도당</u> <u>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u> 또는 지역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관할 읍·면·동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사. ~ 파. (현행과 같음) 하. ----- ----- -----<u>시·도당 또는 지</u>
---	---

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 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생 략) 2. 의례적 행위 가. (생 략) 나. 정당의 대표자가 <u>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 파. (생 략)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u>역당</u>----- ----- ----- ----- ----- ----- 거.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u>중앙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u>----- -----<u>(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 ----- ----- ----- -----<u>대표자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 대표자를 포함한다</u>----- ----- ----- ----- 다. ~ 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政黨은 選舉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u>시·도당</u> 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u>시·도당이나 지역당</u> ----- ----- ----- -----.

<남인순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候補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 候補者登錄期間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될 수 없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u>시·도당 창당승인취소</u> 로 인하여 黨員資格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 ----- ----- ----- ----- ----- -----, ----- ----- <u>시·도당 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u> -----.
⑦ ~ ⑮ (생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政黨은 候補者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登錄期間중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 中央黨의 <u>시·도당창당승인취소</u> 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 ----- ----- ----- ----- ----- -----, ----- ----- ----- <u>시·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u> 외의-----

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 다음으로 한다.

②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録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
의 登録은 無效로 한다.

1. ~ 5. (생략)

6. 政黨推薦候補者가 黨籍을 離脫·
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
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錄申請시
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 11. (생략)

② ~ ④ (생략)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 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시·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
당창당승인취소-----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
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
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
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
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
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
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⑦ (생 략)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
위

가. ~ 마. (생 략)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 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
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을 관
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시·도

<u>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u> <u>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u> <u>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u> <u>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u> <u>의를 말한다)에</u> 참석한 당직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 사료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 위 사. ~ 파. (생 략)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 무과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 기 위하여 <u>시·도당</u>을 방문하 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 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 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료 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생 략) 2. 의례적 행위 가. (생 략) 나. 정당의 대표자가 <u>중앙당 또는</u> <u>시·도당</u>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u>중앙당 대표자</u> <u>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u> <u>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u>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u> <u>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u> <u>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u> <u>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u> <u>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u> <u>의를 말한다) 또는 지역당의</u> <u>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u> <u>의(관할 읍·면·동의 수에</u> <u>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u> <u>석하는 회의를 말한다)----</u> 사. ~ 파. (현행과 같음) 하. ----- ----- -----<u>시·도당 또는</u> <u>지역당</u>----- ----- ----- ----- ----- 거.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u>중앙당, 시</u> <u>·도당 또는 지역당</u>----- -----<u>(중앙당 대표</u> <u>자의 경우 시·도당 및 지역</u> <u>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u> <u>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u>
--	---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u>대표자를 포함한다</u>)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 파. (생략) 3. ~ 6. (생략) ③ ~ ⑤ (생략)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政黨은 選舉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u>시·도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경우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 ----- ----- ----- -----<u>대표자</u> <u>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 대표자를 포함한다</u>----- ----- ----- 다. ~ 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 ----- -.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 ----- -----.
--	--